

폐기물처리(재활용) [] 신고서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①상 호 (명 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
	⑤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⑥업 종	
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	
⑧재활용대상 폐기물	
⑨재활용 제품 등	
⑩시설 현황 (종류, 규격, 수량)	
⑪일 처리능력	
⑫수집·운반차량 현황 (종류, 톤수, 대수)	
⑬재활용 공정도	
⑭영업개시일	

⑮보관시설 및 보관량	규격(m)	용량(m ³)	수량(개소)	보관대상 폐기물	허용보관량(톤)

⑯변경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⑰변경사유	
-------	--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
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
 에 따라 폐기물처리 []신고
 를 합니다. []변경신고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<p>1. 신고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가.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. 폐기물 수집·운반 계획서(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다.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라.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마.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(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바.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사. 폐기물을 성토재·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(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<p>2. 변경신고의 경우: 신고증명서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